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시중구태평로1가31번지/ 전화(02) 731-6556 / 전송(02)731-6562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(시청본관 3층) / 담당 : 김 현 주

문서번호 법무 11010- 2935

시행일자 1997. 12. 20

(제 1 안)

수신 내부절재

참조

		시 장	
보존		서	직무대리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담당관	홍		
법제계장	김현주		
기안	김현주		

제목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폐지규정 등 2건 발령



1. 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.

가. 발령예정일 : '97. 12. 26(금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 훈령 제860, 861호

- 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 2. 발령안 1부.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: 공보담당관

제목 : 훈령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7. 12. 26 (금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860, 861호

- 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2. 발령안 1부.끝.

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훈령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 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 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6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7. 12. 26(금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860, 861호

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처 민원조사담당관, 상수도사업본부(과정과)

훈령 발령 목록

2건(페이지)

연 번	법 규 명	주 관 부 서	번 호
1	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폐지규정	민원조사담당관	제860호
2	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포상금지급규정폐지규정	상수도사업본부 (과장파)	제861호
	“이하여백”		

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폐지

시민불편신고사무
처리규정 폐지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7년 12월 26일

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 덕



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폐지규정안

1.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

- '95. 7. 1부터 시민불편 신고에 관한 제도가 시정통신엽서제도에서 구정통신엽서제도로 전환 되었으므로 그 존치의 실익이 상실된 등 규정을 폐지 하려는 것임.

서울특별시훈령제

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

우편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 731-6101~9 / 전송 731-6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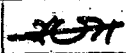

처리부서: 민원조사담당관(시청본관1층) 담당 이재홍

문서번호 민조 16070-139
시행일자 1997. 12. 02.

(경유)

수신 법무담당관

참조

선 결	법무담당관 3		지 시	
접 수	일자 시간	1997. 12. 02	결 재	법제계장 
	번호	5220		법제심사계장 
처리과			·	
담당자			공 람	

제목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 폐지

1.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 훈령 675호(89.6.20) 개정 훈령 제 825호(96.1.31)를 시장방침 1143호(97.11.13)로 폐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 5부. 끝.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폐지규정안

제정일자	1995. 12. 3	제 20 회
담당자	인제집사부장	부할당관
김	유	홍

1.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

- '95. 7. 1부터 시민불편 신고에 관한 제도가 시정통신엽서제도에서 구정통신엽서제도로 전환 되었으므로 그 존치의 실익이 상실된 동 규정을 폐지 하려는 것임.

국립지리원

우 442-388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11 / 전화·전송 (0331) 211-1767(교306) 담당 정택영

문서번호 육지58250-614

발달지 1995. 5. 26

발송 내부부장관

참조 지적과장

신청	과장	양	지	
접	일자	1995 5.30	시	
수	번호		재	
처리	과	1473	공	
담당	자		할	

1. 국가기준점관리에 관한 협조요청

국리원에서는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, 이들 점들은 측량,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

2. 측량법제18조(측량표의 보호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삼각점을 이전 또는 손괴하거나, 기타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할수 없으나,

3.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기본삼각점에 영구측표(항말)를 설치하여 시계방향, 전파장애, 자기영향, 장비설치장애 등으로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기본측량(천문, 인공위성(GPS), 지자기측량)과 GPS에 의한 공공측량이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영구측표를 개조 또는 철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, 기본삼각점반성위원회 설치되었던 위치에 지적삼각점을 설치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

국립지리원



서울특별시

우편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 731-6101~9 / 전송 731-6015

처리부서: 민원조사담당관(시청본관1층) 담당 이재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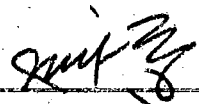


문서번호 민조16070-

시행일자 1997. 12.

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 장	
보존			
감사실장	전결		
민원조사담당관			
민원총괄계장			
기안	이재홍	협조	

제목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 폐지

1.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 훈령 675호(89.3.20) 개정 훈령 제 825호(96.1.31)호로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 1부. 끝

(제2안)

수신 : 법무담당관

제목 :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 폐지

1.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 훈령 675호(89.6.20) 개정 훈령 제 825호(96.1.31)를 시장방침 1143호(97.11.13)로 폐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 5부. 끝.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

우편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 731-6101~9 / 전송 731-6015
 처리부서: 민원조사담당관(시청본관1층) 담당 이재홍

분서번호 민조16070-
 시행일자 1997. 11.

(경유)

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	
부	시	장	전
감사실장	[Handwritten Signature]		
민원조사담당관	[Handwritten Signature]		
민원총괄제장	[Handwritten Signature]		
기안	이재홍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 폐지안 보고

1. 훈령 제675호(89.3.20) 개정훈령 제825호(96.1.31)호 운영하던
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.

따로붙임 : 시정통신엽서제도 검토 보고 1부. 끝.

결재
 1997. 11. 13
 부시장
 001143

서울특별시

훈령·예규등의 자치법규화 대상 조사표

양식 #2

제 명 :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

부서명 : 감사실 민원조사담당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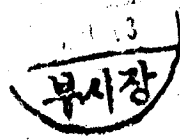
현 재				정 비 방 안				
① 규정 형식	② 시행 근거 및 일 자	③ 법규집 수 록 여 부	④ 주 요 골 자 (시민 권리제한·의무부과 사항은 반드시 기재)	⑤ 자 치 법규화		⑥ 폐지	⑦ 존속	⑧ 사 유
				조례	규칙			
훈령	훈령제675호 (89.3.20) 개정훈령 제825호 (96.1.31)	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1권제4편 1022페이지 에 수록	(훈령) ○ 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			○		○ '95.7.1부터 시정통신업서 제도를 구정통신업서로 전환토록 하였으나 동제도의 근거가 되는 동규정은 폐지절차를 거치지 않 존속하여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폐지 필요 ※ 별첨 : 시정통신업서제도 검토보고

담당부서 : 감사실 민원조사담당관

⑨ 처리담당 : 김 남 식 (전화 : 731-6012)

담당계장 : 김 경 한 (전화 : 731-6011)

1997. 10.



시정통신엽서제도 검토 보고

민원조사담당관

시정통신엽서제도 검토 보고

본격적인 자치시대의 도래,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불편사항등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되 오던 시정통신엽서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

부시장

□ 시정통신엽서제도 개요

- 시정통신엽서제도 :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「시정통신합」을 동사무소, 통장대동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하여 시정통신엽서를 이용 각종 생활불편사항, 건의사항 등을 신고 접수후 처리
- 시행일시 : 1989. 1. 1 (시장방침 제8호)
- 근 거 :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(서울시훈령675호 89.3.20)
- 신고대상 :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, 기타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

□ 현 황

- 연도별 접수현황

구 분	'89	'90	'91	'92	'93	'94	'95	'96	'97.10
발생건수	18,958	5,904	2,048	1,224	990	552	313	106	41 (99)
전년대비 증감율(%)	-	△68.9	△65.3	△40.2	△19.1	△44.2	△43.3	△66.1	△54.7

○ 운영실태

엽서합수	총비치매수	정비대상	
		엽서비치운영	파손·망실등으로 미운영
608	12,001	304	304

- 대부분의 구청은 구자체의 엽서제도와 전화민원으로 대체하여 운영 시민엽서제도 운영중단
- 일부 구청에서 엽서합과 엽서를 비치하고 있으나 다양한 민원신고제도로 대체 예정이거나 시정통신엽서 폐지 건의

※ 구별 시정통신엽서제도 운영현황 : 별첨

부시장

□ 문제점

○ 매년 이용율이 대폭감소 추세

- '96년 접수건수 : 106건 (97. 10말 현재 41건)
- '89년 대비 '96년 이용율 : 0.6%

※ 감소원인

- 「120 전화민원」, 「PC 통신민원」 등 편리한 신고창구 개설
- 민선이후 자치구 자체의 각종 민원수렴창구 개설

○ 시정통신엽서합 방지 및 관리부실

- 구청의 방치로 훼손, 망실되거나 퇴색·오손등 관리부실
- 관리되고 있는 엽서합도 구,시청 마크가 표시되어 교체필요
- 일괄제작·교체시 비용부담에 비하여 투자효과가 없음

해소대책 추진

- '94. 8.11 동행정쇄신 종합개선대책(시장방침 제888호)의 일환으로, 이용하기 편리한 전화신고로 대체하고 동사무소, 통장택 시정통신엽서함 설치제도 폐지 추진토록 하였고,
- '95. 7. 1부터 시정통신엽서제도를 구정통신엽서제도로 전환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방침 시달 (94. 8.29)

검토의견

- 시민불편엽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은
 - 현재 대부분의 구청에서 자체여론 및 민원수렴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
 - 「120 전화민원」, 「PC통신민원」 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체도가 구비되어 자원투입 및 행정력부담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음
- 시정불편엽서제도를 구정통신엽서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고 「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」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

조치사항

- 「시민불편신고 사무처리규정」 폐지 추진 (민원조사담당관)
 - 법무담당관의 '97 법령·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
- 「구 민원신고 사무처리규정」 제정 (구청)
 - 각구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
- 시민통신엽서함과 엽서수거 폐기 (구청)

□ 구별 시정통신업서제도 운영현황

'96. 12. 31

구 분	업 서 합 수			업서수	비 고
	계	비 치	미비치		
계	608	304	304	12,001	
종로구	-	-	-	-	「종로구민의소리함」, 666 대체
중 구	-	-	-	-	직소민원실의 PC 민원접수 제, ARS(264-0120) 제도 대체
용산구	-	-	-	-	구정통신업서제로 대체
성동구	-	-	-	-	「구민과 구청자의 직접대화합」, 으로 대체
광진구	77	13	64		「민원해결방」, ARS(454-0120), 「아이디어보상제」, PC통신 민원접수제 운영, 시정통신업서제 폐지 전의
동대문구	-	-	-	-	「120번 민원전화」 신고제로 대체
중랑구	-	-	-	-	「120 민원전화」, 「구민의소리」 등 전화신고로 대체 전의
성북구	167	167	-	8,910	구정통신업서로 대체 추진중
강북구	-	-	-	-	「구청장에게 편지함」, 으로 대체
도봉구	-	-	-	-	「나의느낌함」, 으로 대체
노원구	122	59	63	2,129	유사제도(환경오염발생신고, 교통불편신고등) 활성화로 대체예정
은평구	90	-	90	-	
서대문구	48	-	48	-	120민원전화, 구청 기동처리반 운영등 민원창구 다양화, 시정통신업서 폐지 전의
마포구	-	-	-	-	「120 전화 종합민원센터」, 「고충제안제도 청취함」, 으로 대체
양천구	-	-	-	-	「구민의 소리함」, 으로 대체
강서구	-	-	-	-	「구정모니터 업서제도」로 대체
구로구	-	-	-	-	「구민건의의함」, 「구민의소리(860-2222)」, ARS (837-0120)제로 대체
금천구	-	-	-	-	구정통신업서, ARS 종합민원 신고센터, PC통신 으로 대체
영등포구	45	45	-	-	「직소민원실」, 「0120 구민의소리」 운영, 시정통신 업서제 축소운영(200→45개소)
동작구	-	-	-	-	「민원전화 120」, 「구민의소리 6666」, PC통신(구청장에 바란다), 「구민의 방」, 으로 대체
관악구	-	-	-	-	전화, PC, 구민의소리로 대체, 시정통신업서 폐지 예정
서초구	59	20	39	962	「강남신문고」 제도 (FAX, PC), 120민원전화 로 대체예정
강남구				-	「구시책점검단」 편성·활용으로 대체
송파구				-	「구청장에게 바란다」 제언함으로 대체
강동구				-	「구청장께 바란다 함」, 으로 대체